제 13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35조(설치와 구성)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를 위한 제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하며,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학년담임교수와 교목으로 한다.
3.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학생위원은 의과대학 학생회 추천 학생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36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학생의 학습, 생활 및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학생의 국내외 봉사 활동 지원
5. 학생의 타 대학 및 외국 대학과의 교류활동에 대한 지도 [개정 2019년 3월 26일]
6. 학생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부당행위(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강압과 폭행, 시험부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제37조(학생지도 소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성적관리 및 소명 소위원회를 두어 학생의 성적과 생활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